

홍보위원회규정

(폐지 2020.11.01.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홍보의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교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교 홍보 시안 제작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본 대학교의 대내·외 홍보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, 전략기획본부장, 입학지원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입학처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6.3.28., 2017.3.13., 2018.7.1., 2019.10.01.)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. (개정 2014.3.28., 2019.10.01.))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 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토록하며, 그 임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문제정 2012.11.20.]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 제1항, 제4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폐지한다.